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 마련 >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05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특별재난지역 우선 지원	2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만회의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6. 23.
3. 회 부 일 : 2025. 6.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난개발과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로 홍수, 대형화재, 산사태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대형화·복합화 되면서 농촌 지역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재난 복구 역량이 취약해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특별재난지역 우선 지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2조의2(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지원의 기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재난안전법」 제60조¹⁾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선포 요건으로 국가적 차원의 조치 필요성 등의 다음 네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재난안전법 시행령」)]

호	재난종류	조 건
1	자연재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의2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	재난이 발생한 해당 <u>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u> 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공통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 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u>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u> 되는 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복구비 일부 (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해주고,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참고자료 2·3 참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동 제도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처음 도입된 이래 태풍, 폭설,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사태에 대응하여 운영되어 왔음.

최근에는 2025년 3월 경남·경북·울산에서 초대형산불이 발생하여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동 지역에는 주택의 전파·반파, 도로·공공건물·마을기반시설·상수도·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피해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긴급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한편, 복구계획이 수립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개별적·일회적 보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마을이 전소되어 전력·통신, 상·하수도, 도로 등 생활기반 자체가 붕괴된 경우에는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²⁾

더욱이, 2024년 농가인구는 2021년 대비 10.5% 하락하여 감소추세가 가파르고, 농촌의 고령화율이 55.8%로 증가하는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농촌은 대형재난에 대한 복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

[농가 인구구조 변화 추이]



※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통계청, 2025. 4.)

2) 「2025년 산불피해 농촌 삶터, 중장기 종합 농촌재생 대책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 5.)

이에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³⁾의 우선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을 통하여 사회기반이 붕괴된 농촌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생과 회복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특별재난지역은 태풍, 호우,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정 읍·면·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 규모 또는 다수의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선포되고 있음. 일례로 2002년 태풍 루사의 경우,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전국 일원)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

그런데, 이러한 선포지역의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재난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농촌 지역까지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 될 우려가 있음. 특히 이로 인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지역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 제도의 합리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둘째, 특별재난지역 제도는 특정 시점에 발생한 재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선포 이후 별도의 해제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있음.⁴⁾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은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는 ‘재구조화’와, 교통·교육·문화·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를 확충하는 ‘재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마을 리모델링, 시설확충과 같은 물리적 정비뿐만 아니라, 지역특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축제 개최 등의 비물리적 활동을 포괄하고 있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분야별 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2025. 4.)

4) 현재까지 특별재난지역 해제된 사례 없음(행정안전부).

이는 특별재난지역 제도가 재난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되는 사건 중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으로 인하여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한 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계속해서 지원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시간이 경과될수록 상당수의 지역이 법률적으로는 계속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더욱이, 개정안은 부칙 제2조에서 개정조문을 법 시행 이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입법화된다면 이미 전국의 지역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포함⁵⁾되는 상황임.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재난 복구 역량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피해 회복에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시급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으나,

① 특별재난지역이 광범위한 지역에 선포되어 피해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점, ② 선포 이후 해제 절차가 없어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지역이 점차 누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우선지원 대상 규정 방식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417

5)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로 전국 일원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재해연보」, 행정안전부).

참 고 자 료

참고 1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개요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4.12.)

□ 개 요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 **(운영취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

□ 선포기준 및 절차

- **(검토대상)**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
- **(선포요건)** 시·군·구는 피해액 65~142.5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6.5~14.25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액의 1/10)

재정력지수	국고지원기준 피해액	선포기준액		비 고
		시·군·구	읍·면·동	
0.1 미만	26억원	65.0억원	6.5억원	-
0.1 이상 ~ 0.2 미만	33억원	82.5억원	8.25억원	52개 시군구
0.2 이상 ~ 0.4 미만	41억원	102.5억원	10.25억원	75개 시군구
0.4 이상 ~ 0.6 미만	49억원	122.5억원	12.25억원	50개 시군구
0.6 이상	57억원	142.5억원	14.25억원	51개 시군구

- **(선포절차)**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재가·선포

선포 요청·인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선포건의	선포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중앙대책본부장 인정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31개 중앙부처의 장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앙대책본부장→대통령)	대통령 재가

□ 주요 지원내용

-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12개 항목 추가 지원**
※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참고 2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4.12.)

□ 일반재난지역 : 18개 항목 지원

□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 (18개)	특별재난지역 (30개)	비고																											
1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2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	「국민연금법」 제91조																											
4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5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table><tr><th>분야별</th><th>제공기관</th><th>상환조건</th><th>이자</th></tr><tr><td>농업</td><td>농협</td><td>5년거치 10년상환</td><td>1.5%</td></tr><tr><td>어업</td><td>수협</td><td>〃</td><td>〃</td></tr><tr><td>임업</td><td>산림조합</td><td>〃</td><td>〃</td></tr><tr><td>주택</td><td>우리은행</td><td>3년 거치 17년 상환</td><td>〃</td></tr><tr><td rowspan="2">중소기업·소상공인</td><td>일반은행</td><td>2년 거치 3년 상환</td><td>2.0%</td></tr><tr><td>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td><td>〃</td><td>1.9%</td></tr></table>	분야별	제공기관	상환조건	이자	농업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어업	수협	〃	〃	임업	산림조합	〃	〃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	중소기업·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9%	○	○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분야별	제공기관	상환조건	이자																													
농업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어업	수협	〃	〃																													
임업	산림조합	〃	〃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																													
중소기업·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9%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	농기계 수리 (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	○	○	민간 자율 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	「병역법」 제61조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	「서명확인법」 제14조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 (18개)	특별재난지역 (30개)	비고
13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 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16	경영희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희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	민간 자율 지원
19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2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2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고용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22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23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	「천연가스공급규정」 (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24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25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26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	「전파법」 제67조
27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국방부·병무청·행정안전부)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당해연도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	○	「병역법」 제49조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	「농지법」 제38조
29	TV 수신료 면제 (방송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30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참고 3

사회재난 간접지원 항목

구분	지원항목	지원기준	관계법령	비고																											
1	국세 납부 유예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2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채납처분 유예 및 감면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기본법」 제26조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최장 12개월 연금납부 예외 (연장 사유 지속 시 납부 예외 연장 가능)	「국민연금법」 제91조																												
4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5	재해복구자금 용자	<table><tr><th>분야별</th><th>제공기관</th><th>상환조건</th><th>이자</th></tr><tr><td>농업</td><td>농협</td><td>5년거치 10년상환</td><td>1.5%</td></tr><tr><td>어업</td><td>수협</td><td>"</td><td>"</td></tr><tr><td>임업</td><td>산림조합</td><td>"</td><td>"</td></tr><tr><td>주택</td><td>우리은행</td><td>3년 거치 17년 상환</td><td>"</td></tr><tr><td rowspan="2">중소기업·소상공인</td><td>일반은행</td><td>2년 거치 3년 상환</td><td>2.0%</td></tr><tr><td>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td><td>"</td><td>1.9%</td></tr></table>	분야별	제공기관	상환조건	이자	농업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어업	수협	"	"	임업	산림조합	"	"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	중소기업·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9%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보증기금 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 진흥법」 제61조	
분야별	제공기관	상환조건	이자																												
농업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어업	수협	"	"																												
임업	산림조합	"	"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																												
중소기업·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9%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주택전과 : 500만원 - 재산 1,000만원 이상 피해시 50만원 등 ※ 화재 이외 사회재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만 지원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	농기계 수리지원	농기계 유·무상 수리 *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기계회사·수리업체와 지원·협조 체계가 구축된 경우 지원가능	민간 자율 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	「공간정보관리법」 제106조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병역법」 제61조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등 감면	재난 피해 발생 시 사용하지 못하는 국·공유재산, 소득이 감소된 국유림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국유재산법」 제34조 「공유재산법」 제24조 「국유림법」 제23조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서명확인법」 제14조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재난으로 상속재산 멸실·훼손 시 손실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13	과태료 징수 유예	재난피해로 과태료 납부 곤란 시 과태료 납부기일 등 연기(1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3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재난 등으로 차량 운행 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검사기간 연장·유예	「자동차관리법」 제43조																												
15	위기가족 긴급지원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																												
16	농지임대료 감면	맞춤형농지지원 사업(한국농촌공사 시행)에 대해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30% 이상인 농업인 임대 농지를 피해율에 따라 임대료 차등 감면(45~100%)	「농어촌공사법」 제18조~제24조의3																												

구분	지원항목	지원기준	관계법령	비고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18	우체국 예금보험료 납입 유예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우체국 보험료 납입유예(6개월), 통장 재발급 수수료 면제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19	법률지원 서비스	지자체 요청 시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인력 파견	-	
20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 예외 적용	재난피해자의 의약품 중복처방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 허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21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연기	재난피해자의 예비군 훈련 연기	「병역법」 제61조 「예비군법」 제5조	
22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당해연도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민방위기본법」 제23조	
23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	재난피해자 중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자의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2년 이내)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1조	
24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피해정도에 따라 30~50%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특별재난 지역 추가지원 항목
25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예외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26	전기요금 감면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 및 파손은 1개월분의 50% 감면)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 지침	
27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 - (취사·난방용) 전파 12,400원, 반파·침수 6,200원	「천연가스공급규정」 (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	
28	지역난방요금 감면	재난피해로 인해 열공급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열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열공급규정」 (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	
29	유·무선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시내·인터넷 전화 월 요금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 요금 50% 감면 이동전화 월 요금 최대 12,500원 감면 주거시설 유선·전파·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30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유료방송 서비스(IPTV, 케이블방송, 위성) 요금 감면, 주거시설 유선·전파·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 ※ 감면을 및 지원항목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	-	
31	특허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및 소상공인의 특허료, 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3조	
32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전파법」 제67조	
33	TV 수신료 면제	TV 수상기 등의 수신료 일정기간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방송법」 제64조	
34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재난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신·증·이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단독주택 부지의 총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한정	「농지법」 제38조	
3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재난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신·증·이축 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위한 산지의 총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한정	「산지관리법」 제19조	
36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당해연도 잔여 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 면제	「병역법」 제49조 「예비군법」 제5조	

※ 자료: 재난안전대책본부

참고 4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년도	구분	선포일	선 포 내 용
2014	사회	'14.4.21	2014. 4. 16.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전라남도 진도군, 경기도 안산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14.9.5.	2014. 8. 25. 호우 관련 부산 북·금정·기장, 경남 창원·고성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2016	자연	'16.9.22	2016. 9. 12. 지진 관련 경북 경주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16.10.10 '16.10.17	2010. 10. 3.~6. 제18호 태풍 차바 관련 (10.10.)울산북구,울주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 (10.17.)부산사하,경북경주,경남거제·통영·양산,제주도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
2017	자연	'17.7.27	2017. 7. 14.~16. 호우 관련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17.11.20	2017. 11. 15. 지진 관련 경북 포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2018	자연	'18.7.18	2018. 6. 26.~7. 4. 호우 및 제7호 태풍 뿌라삐룬 관련 전남 보성(보성·회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18.9.17	2018. 8. 23.~24. 제19호 태풍 솔릭 및 8. 26.~9. 1. 호우 관련 전남 완도(보길), 경기연천(신서·중·왕징·장남),경남함양(함양·병곡)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
	자연	'18.10.24	2018. 10. 4.~7. 제25호 태풍 콩레이 관련 전남 고흥(동일)·완도(청산·소안) 경북영덕·경주(외동·양북),경남거제(일운·남부)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
2019	사회	'19.4.6.	2019. 4. 4. ~ 6. 강원 동해안 산불 관련 강원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19.9.20	2019. 9. 6.~7. 제13호 태풍 링링 관련 인천 강화, 전남 신안(흑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19.10.10 '19.10.17	2019. 10. 1.~4. 제18호 태풍 미탁 관련 (10.10.)강원삼척,경북울진·영덕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 (10.17.)강원강릉(강동·옥계·사천)·동해(망상),전남해남·진도(의신),경북경주·성주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
2020	사회	'20.3.15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20.8.7., '20.8.13 '20.8.24	2020. 7. 28.~8. 11. 호우 관련 (8.7.)경기안성,강원철원,충북충주·제천·음성,충남천안·아산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 (8.13.)전북남원,전남구례·곡성·담양·화순·나주·함평·영광·장성,경남하동·합천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 (8.24.)광주북·광산·남(효덕·대촌)·동(학운·지원2)·서(유덕·서창),대전동(중앙),경기이천·연천·가평·용인(원삼·백암)·포천(이동·영북)·양평(단월),강원화천·양구·인제·춘천(동·남·남산)·홍천(홍천·화촌)·영월(영월·남),충북영동·단양·진천(진천·백곡)·옥천(군서·군북)·괴산(청천),충남금산·예산,전북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임실(성수·신덕)·고창(아산·공음·성송),전남광양(진월·다압)·순천(황진),경북봉화(봉성·소천),경남산청·함양·거창·의령(낙서·부림)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
		'20.9.15 '20.9.23	2020. 9. 1. ~ 3.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2020. 9. 6. ~ 7. 제10호 태풍 하이선 관련 (9.15.)강원삼척·양양,경북영덕·울진·울릉 (9.23.)부산기장(기장·일광),강원강릉·인제·고성·속초(대포)·평창(봉평·진

년도	구분	선포일	선 포 내 용
			부·대관령),경북포항·경주·청송(청송·주왕산·부남·파천)·영양(영양·일월·수비),경남거제(동부·장평)·양산(상북)·남해(상주·남),제주(애월)
2021	자연	'21.7.22	2021. 7. 5 ~ 8. 집중호우 관련 (7.22.)전남장흥·강진·해남,전남진도(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에대 해특별재난지역선포
	자연	'21.9.6.	2021. 8. 24 ~ 25.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관련 (9.6.)경북포항시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
2022	사회	22.3.6	2022.3.4.~3.13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관련 (3.6)경북울진,강원삼척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
	사회	22.3.8	2022.3.4~3.13. 경북, 강원 동해안 산불 관련 (3.8)강원강릉,동해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
	자연	22.8.22 '22.9.1.	2022.8.8.~17. 집중호우 관련 (8.22.)서울영등포구·관악구,경기성남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금사면·산 북면),강원횡성군,충남부여군·청양군 서울강남구개포1동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 (9.1.)서울동작구·서초구,경기여주시(시전체),강원홍천군,경기의왕고천동· 청계동,용인시동천동 충남보령시청라면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
	자연	22.9.7. '22.9.28.	2022.9.3.~8. 제11호 태풍 힌남노 관련 (9.7.)경북포항시,경주시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 (9.28.)울산울주군온산읍·두서면,경남통영시욕지면·한산면,거제시일운면· 남부면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
	사회	22.10.30	2022.10.29. 이태원 사고 관련 (10.30.)서울용산구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
	자연	23.1.9.	2022.12.17.~24. 대설한파 강풍 관련 (1.9.)전북순창(쌍치면)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
2023	사회	4.5.	'23년 4월 산불 관련 (4.5.)대전서구,충북옥천,충남홍성·당진·금산·보령·부여,전남함평·순천·영 주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
	사회	4.12	'23년 4월 산불 관련 (4.12.)강원강릉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
	자연	23.8.14.	23.4. 4월 농작물 재해 관련 (8.14.)경북의성군·청송군,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 황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북후면,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 읍·순흥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 상주시 모동 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안동시 길안면·예안면은 호우와 중복
	자연	7.19. 8.14.	6.27~7.27 호우 관련 (7.19.)세종,충북청주시,괴산군,충남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전북익산 시,경북예천군,봉화군,영주시, 문경시,전북김제시(죽산면)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 (8.14.)충북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 남 신안군, 충북 보은군(회인면), 증평군(증평읍, 도안면), 음성군(음성 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서수면), 고창군(공음면·대산면), 부안군(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금 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동문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8.29	8.9~11 제6호 태풍 카눈 관련 (8.29.)대구군위군,강원고성군,경북경주시(산내면),칠곡군(가산면)에대해 특별재난지역선포

※ 자료: 행정안전부 「재해연보」